

貨換信用狀統一規則 및 慣行에 關한 研究

—第4次 改正內容을 中心으로—

崔宗洙

A Study on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83 Revision

Jong-Soo Choi

.....<目次>.....	
I. 序言	分析
II. 統一規則、第4次改正外지의 背景과 經緯	1. 第3次 改正案과 第4次 改正 案의 對比
1. 통일 규칙의 制定과 1차~3차 改正	2. 改正內容과 主要特徵 (1) 總則 및 定義 (2) 信用狀의 形式과 通知 (3) 責任과 義務 (4) 書類 (5) 其他條項
(1) 各國의 신용장규칙 統一運 動과 ICC 統一規則의 制定	
(2) 統一規則 1차~3차 改正	
2. 統一規則 第4次改正의 背景과 經緯	
III. 統一規則 第4次改正案의 内容	IV. 結語 参考文獻

Abstract

The dependent rate of foreign trade in Korea's economy has been getting over 70% annually, of which tendency is presumed to become deepen thereafter. Out of total export-import turnover in Korea, approximately 90% transactions are being carried out by the means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s. This is the reason why the letter of cred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for foreign trade.

Sin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adopted the first edition of the Unif-

* 海洋貿易學科 專任講師

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 1933, this UCP-being as a living text in world trade-has been revised 4 times. Innumerable aspects of international trading operations have changed radically over the intervening years. Yet the UCP remain a vital element in world trade. An everincreasing number of banking and other executives still need to know UCP's provisions thoroughly and use them every day, because only sound understanding of correct commercial customs and rules can get ovoid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occurable.

It was inevitable for the UCP, since the 3rd revision in 1974, to be revised owing to the main reasons of: the continuing revolution in transport technology,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rade facilitation activities on development of new documents,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development of new types of documentary credits such as the deferred payment credit and the stand-by credit. The 4th revision, made in June, 1983, is to be in force from October 1, 1984.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in Korea's trade promotion and thereby in taking national economic progress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rocess.

- ① to look back the process of 1st, 2nd and 3rd revision of UCP.
- ② to research the main background and process of 4th revision.
- ③ to look into details of 4th revision by comparing 4th revision with 3rd revision.
- ④ to point out some problems occurable.
- ⑤ to comment about some counter-measures for problems.

Main materials used in this paper came from documents and correspondence exchanged between ICC-Paris and ICC-Korean National Committee since 1980.

I. 序 言

한국경제의 貿易依存度는 70년대 전기간을 통하여 연평균 70%를 상회해 왔고 이와 같은 추세는 80년대 초에 이르자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韓國과 같이 賦存資源이 빈약한 經濟與伴 아래에서는 貿易의 比重이 갈수록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財貨나 用役을 買受人에게 제공하고 反對給付로 代價를 受取한다는 점에서는 內國의 商行爲는 國際間의 貿易去來는 同一하다 하겠으나 貿易(Foreign Trade)은 關稅線(Customs Line)을 사이에 두고 國적이나 商慣習 또는 法規를 달리하는 遠隔地의 異國輸出入業者間に 주로 이루어지는 特性을 갖고 있어 契約締結의 시작에서부터 去來終了에 이르기 까지의 全過程에서 各國法의 內容이나 利潤追求를 目적으로 하는 契約當事者의 懇解가 相異하여 物權의 變動이나 危險 및 費用負擔의 限界에 관한 去來用語의 解釋에 차이가¹⁾ 나타나는 수가 많다.

1) M. S. Rosenthal, Techniques of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McGraw-Hill, 1950, p.4.

貿易去來에 수반되는 위험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代金決済에 대한 위험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代金의 受拂行爲가 거래의 全過程中 가장 重要한 분야라 하겠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 당사자 즉 輸出商과 輸入商間에 財貨의 이동에 따른 換決済의 安定性과 確實性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信用狀(Letter of Credit) 制度가 생기게 되고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가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貨換信用狀統一規則 및 慣行(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略稱 信用狀統一規則: UCP)을 1933년에 制定公表한 이래 우리나라를 물론 經濟體制나 政治制度를 초월하여 世界經濟를 主導하는 大部分의 國家가 포함된 113個國이 현재 이 규칙을 採擇・施行함으로써 國際貿易에 關한 限信用狀制度는 汎世界性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制度는 國內交易去來와 海外支店 등의 債務履行保證에도 이용되고 있다. 代金支給方式을 기준으로 한 무역거래 형태가 여러가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輸出과 輸入을 통틀어 全去來의 90% 정도를 信用狀方式에 따르고 있다는 점과 무역 의존도가 극히 높다는 점을 볼 때 신용장에 대한 폭넓고도 깊은 연구는 必要不可缺할 뿐만 아니라 특히 現行 신용장 통일 규칙이 1983년에 第4次로 改正公表되어 1984년 10월 1일부터 効力を 발생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理解와 貿易有關機關, 즉 銀行, 運送人 및 貿易業體에의 普及과 施行에 따른 준비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필요성에 부응키 위하여 신용장 통일규칙의 制定經緯와 1차개정에서 3차개정에 이르는 그간의 來歷을 간단히 살펴본 뒤 第4次 改正案을 條項別로 第3次 改正規則과 對比시켜 가면서 그 內容을 分析究明함과 아울러 4次改正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未決 또는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點明으로써 信用狀統一規則에 대한 知識의 부족에서 오는 信用狀關係의 國際紛爭은 물론 막대한 외화의 損失을 未然에 防止토록 하고 輸出指向政策의 實行과 貿易業務履行의 圓滑化에 寄與코자 한다.

主된 研究資料로서 신용장통일규칙 制定에서 3次改正까지는 ICC Brochure No. 82, ICC Brochure No. 151, ICC Brochure No. 222 및 ICC Publication No. 290을, 3차개정 이후 4차개정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國제상업회의소와 各國의 國內商(工)業會議所나 銀行等 貿易有關機關間에 交信된 수많은 質疑書와 이에 대한 ICC Banking Commission 側의 有權解釋回信이나 決定事項(Decis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1975~1981 等) 및 4차개정의 確定文案인 ICC Publication No. 400(Doc. No. 470/408, 1983. 6. 7.)을 利用하였으며 특히 4次正에 이르기 직전의 ICC Banking Commission의 많은 會議錄과 ICC Doc. No. 470/367, ICC Doc. No. 470/391, ICC Doc. No. 470/394, ICC Doc. No. 470/396, ICC Doc. No. 470/403, ICC Doc. No. 470/405 및 ICC Doc. No. 470/406 等이 그간의 經緯를 點明하는데 크게 활용되었다.

II. 統一規則 第四次 改正까지의 背景과 經緯

1. 통일규칙의 制定과 1차~3차改正

1. 各國의 신용장규칙 統一運動과 ICC 統一規則의 制定

信用狀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된 年代를 古代 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 찾기도 하고²⁾ 中世紀地中海와 아시아 및 에짚트 商人에 의한 무역거래상의 決濟手段에서 찾기도 한다. 또한 B.C 575년에 바빌론의 Igibi Bank가 顧客의 Buying Agent로서 신용장을 發給한 일이 있으며 古代 그리스에서도 顧客이 物品購買資金條로 金銀을 흐름에 대신하여 信用狀을 發給했다는가³⁾하면 12世紀경에 法王이나 王侯가 臣下들의 資金調達을 돋기 위해 그들의 信用保證을 위한 書狀을 발행한 데서 根源을 찾기도 한다.⁴⁾ 보다 가까이는 1860年代 런던의 公證人(Public Notary)이었던 Marius의 著書에서 최초의 商業信用狀을 볼 수가 있다.⁵⁾ 이들 초기의 신용장은 旅行者信用狀의 性格과 形式으로 利用・發展되어 왔으며 오늘날의 商業credit과 같이 買賣契約 締結後의 代金決濟手段으로 제공되었다가 보다는 買賣契約 自體를 促進하기 위한 補助手段으로서의 性格이 더 높후하다고 하겠다.

그리나 國際貿易去來에 있어 오늘날 一般化되어 있는 銀行信用狀(Banker's Credit)과 같이 商業信用狀으로서의 形態와 機能을 갖춘 신용장의 利用은 근래의 일로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英國의 Merchant Bank가⁶⁾ 처음으로 信用狀發行銀行(Issuing Bank)으로 등장한다. 그러다가 19세기 後半에서야 一般市中銀行이 어음引受業務를 시작하게 되는데 美國에서는 1914년 Federal Reserve Act가 制定되어 銀行이 外國貿易의 금융업무를 開始함으로써 信用狀을 발행하기에⁷⁾ 이르나 이 당시의 신용장도 旅行者信用狀의 形式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多國間의 交易이 크게 번창하지 못한데다가 國際的 換金融의 여건이 未備하여 決濟手段으로서의 商業credit에 의한 交易은 不振하였다.

第1次大戰 이후에 엄습한 經濟的 惡條件은 世界貿易去來量을 急增시켰고 迅速한 交通・通信手段의

2) W.F. Spalding, Banker's Credit, New York. Wilbert Ward :American Foreign Credits, New York.

3) Wilbert Ward &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4th ed., N. Y.: Ronald Press, 1958, p.45.

4) Sanbon, Origins of the Early English Maritime and Commercial Law, 1920, pp.217~248.

5)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30. p.330. John Marius, Advise Concerning Bills of Exchange. 4th ed. 1968, pp.36~37.

Marius는 信用을 普通信用狀(General L/C)과 特定信用狀(Special L/C)로 구분하고 普通信用狀은 書狀을 발행한 商인이 모든 거래 상인에게 提示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特定인에게 一定額의 資金을 調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자금은 지정된 期間內에 一定額의 利子를 加算하여 상환될 것이며 영수증에 의하여 발행되는 換 어음 또는 請求書에 대해 支給責任질 것을 확약하는 證書라고 하였다. 한편 特定信用狀은 商인이 他人의 요청에 따라 그의 代理店 또는 去來商 앞으로 발행한 書狀이며 指定人에게 一定額의 資金을 調達해 주고 이를 신용장 발행인의 計定에 算入할 것을 指示하는 것으로 여기서 비로소 상인은 他人을 위해 신용장을 발행하는 專門業者로 나타나게 되었다.

6) Merchant Bank는 英國에서 18~19세기경 런던의 輸入業者를 代理하여 어음을 引受한 大陸商人에 그 根源을 두고 있는데 어음의 引受 또는 證書發行을 主要業務로 하는 금융기관을 指稱하며 기능에 따라서 Accepting House 또는 Issuing House로 부른다.

7) Charles N. Henning, International Fin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8, pp.145~146.

發達과 信用 未確信 狀態의 外國 去來先에게 商品을 積送해야 하는 不可避性 및 外換率의 頻繁한 變動 等은 近代的 信用狀의 면모를 露신하고 이를 普及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一次大戰의 勃發로 世界의 交易中心地가 美國으로 옮겨지고 國際金融市場 마저 런던에서 뉴욕으로 移轉한 데다 Sterling 貨의 換率變動 극심으로 美弗貨가 國際通貨로서 首位를 차지하게 됨과 아울러 美國이 購買市場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對外 購買契約의 必要性이 높아지자 이의 對應策으로서 國際的으로 統一性을 갖춘 信用狀規則의 必要性이 높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大戰의 終熄으로 1920년 5월부터 物價가 下落하는 等 經濟事情이 急變하자 輸入商이 注文을 취소하거나 購買契約 履行을 拒絕하는가 하면 信用狀에 의한 輸出商의 請求權을 否認하고 發行銀行이 輸入業者の 支給不能에 대한 補償을 거부하는 等의 사태가 續出하였다.⁸⁾ 이와같은 一連의 事態를 前後한 信用狀去來의 혼란은 美國으로 하여금 信用狀統一運動을 主導케 하는 큰 要因이 되었는 바 美國에서의 統一運動過程을 살펴보면 1917년 8월 J.P. Beal의 “Utility of Letters of Credit in Export Trade - a Plea of Standard Forms”라는 論題로 “The Bankers Magazine”에 寄稿하여 신용장의 形式과 內容의 統一化를 처음으로 주張하고 1918년에는 法曹人 Omer F. Hershey가 신용장을 하나의 獨立된 商法으로 自足케 해야할 것과 그려자면 모든 商人們의 공통된 기준에 근거한 統一化가 요청된다고 주장할 것들을 들 수 있다.⁹⁾ 1919년에 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에서 購買當事者の 責任限界에 대한 討議와 함께 信用狀에 관한 統一案을 提出하고 1920년 New York Banker's Commercial Credit Conference에서는 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를 마련하였으며 1922년 American Acceptance Council은 위 規則을 再檢討하고 1926년에는 1920년에 채용된 規則의 改正이 있었는데 이것이 Provisions Adopted by the New York Banker's Commercial Credit Conference로서 美國의 各 銀行에서는 標準樣式으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歐洲大陸에서도 신용장 통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獨逸에서는 1923년 Berlin Bank and Banker's Association이 “Regulations Affecting Commercial Credit Transactions”를 채택하였고 프랑스에서는 1924년 Union Syndicate des Banquiers de Paris et de la Province가 Rules Governing the Opening of Documentary Credit”를 채택하는 등 이 밖에도 Norway, Italy, Swiss, Czechoslovak, Denmark, Holland와 南美의 Argentina 等이 各各 自國의 情形에 맞는 통일규칙을 연이어 채택하게 되었다.¹⁰⁾

8) George. W. Edwards, Foreign Commercial Credit, New York: McGraw-Hill, 1922, pp. 65~67.

9) Harvard Law Review, Nov. 1918.

10) 이들 各國의 통일규칙과 이를 채택한 機構를 보면 다음과 같다.

Norway: 1924년 Norwegian Bankers' Association의 “General Rule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Documentary Credit.”

Italy: 1925년 Italian Banker's Association의 “Regulations Regarding Documentary Credits Available in Italy Covering Goods Shipped by Sea.”

Sweden: 1925년 Association of Swedish Banks의 “Regulation for the Handling of Documentary Credits.”

Czechoslovakia: 1925년 “Conditions of the Association of Czechoslovak Bank in Opening Documentary Credits.”

Denmark: 1928년 “Joint Regulations Governing the Handling of Documentary Credits Opened with the Principal Copenhagen Banks.”

Holland: 1930년 “The Rules of the Holland Bankers Association.”

Argentina: 1926년 “Regulations and Customs Adopted in the Argentine for the Opening of Revocable and Irrevocable Credits.”

그러나 이러한 諸規定들은 各國의 自國法과 商慣習에 따른 것으로 去來相對國과의 內容이나 用語 또는 解釋이 달라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1930年代 世界大恐慌으로 因한 信用狀纠纷爭이 繢出하자 이들을 해소하여 각국의 慣習과 규정을 一般化시킴으로써 國際商去來의 促進을 도모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의 銀行技術實務委員會(Committee on Banking Technique & Practice)가 주축이 되어 1930년 Brochure No. 74로 "Uniform Regulations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라는 報告書를 제출하고 1933년에는 이를 改正·補完하여 同年 Wien의 ICC 7차 총회에서 可決한 ICC Brochure No. 82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를 公表하였으나 이것이 信用狀統一規則의 원형으로 당시까지 自國의 Rule을 채택해 온 Belgium, France, Holland, Germany, Italy, Switzerland, Rumania 等의 歐洲國家와¹¹⁾ Mexico가 이 ICC統一規則을 채택하게 되었다.

2. 統一規則 1차~3차 改正

1933년 ICC Brochure No. 82로 公表된 信用狀 統一規則은 總則, 第1章 信用狀의 形式, 第2章 責任, 第3章 書類, 第4章 文言의 解釋, 第5章 讓渡로 全文 5個章과 總則으로 이루어져 一般法則化한 規定을 集成하는데 까지는 도달하였으나 이는 國際民間機構인 ICC가 制定한 規則으로서 各國 銀行에 이의 採擇을 勸告하는 性格으로 法律的 強制力이 없는데다, 信用狀去來歷史上 中心的地位에 있던 英國이 이를 채택치 않고 있고, 統一規則 提唱國인 美國이 自國의 慣行과는 相馳하는 점이 있어 美國의 慣行을 表示한 약간의 參照規定을 附記하는 條件으로 1938년 7월에야 이를 採擇하는 등 同規則의 世界化에는 制約條件이 많았다. 2次大戰後 世界의 交易이 더욱 활기를 띠자 ICC는 統一規則을 再檢討하고 이의 制定後에 나타난 信用狀機構의 發展과 새로운 慣行 및 舊慣行의 變形 등을 規範化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現存하던 慣行을 보다 詳細히 規範化하고 美國의 參照規定을 反影하여 美國이 條件 없이 採擇토록 歐洲大陸系의 慣行과 美國系의 慣行을 調整하여 1951년 Lisbon의 13차 ICC 총회에서 3년간에 걸친 1次改正案이 決議됨으로써 ICC Brochure No. 151로 1952년 1월 1일부터 이의 實施를 권고하게 되었다. 여기서 "信用狀去來는 書類의 去來이지 商品의 거래가 아니므로 書類만이 支給與否를 결정하는 唯一한 기준이 된다"¹²⁾는 書類重視條項을 추가하게 되었다. 한편 ICC는 統一規則 改正과 併行하여 信用狀標準樣式(Standard Form for the Opening of Documentary Credits)을 制定하고 이의 採擇을 각국 銀行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 1차개정안에는 實際去來適用上의 여러가지 疑問과 問題가 생겨 이들이 ICC에 提起되자 이의 解決을 위해 信用狀統一規則 適用을 위한 註釋을 마련코자 하여 France의 Chales Bontoux 氏를 중심으로 註釋文(commentary)¹³⁾를 作成하였으나 美國側이 이의 채택을 강력히 반대하고 統

11) 이들 歐洲國中 英國과 그 聯邦國의 은행은 ICC 統一規則의 英國法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特定狀況에 따른 유권解석을 選好하여 이의 채택을 留保하거나가 E.E.C.의 加入과 관련하여 第二次 改正案(1962)부터 채택함.

12) Art. 8,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1951, Revision), "In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in documents and not in goods."

13) 商業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의 實察的 適用(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一規則自體의 改正을 주장하여 이 註譯文은 施行되지 못했다. ICC는 統一規則의 2차 改正에 착수하여 美國側의 改正案을 中心으로 검토하였으나 英國이 E.E.C.에 加입할 목적으로¹⁴⁾ 獨自의 改正案을 제출코자 오랜 討議를 거쳐 1962년에 2次개정을 마쳐 同2次改正規則은 1963년 Mexico의 ICC 총회에서 議決되어 ICC Brochure No. 222(1962 Revision)로 公表되고 同年 7월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당시 英國을 위시한 Sterling 지역의 非採譯國들의 參여를 위해 統一規則의 既存方針을 유지하면서 進步的인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採譯國과 London Practice의 취지가 대조된 英國案의 支持國이妥協와 調整에 도달함으로써 채택 領域의 世界化되고 全世界的 統一規則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50년대 後半期에 접어들자 東西貿易去來와 經濟協力의 진전되는 한편 그간의 응행업무와 貿易慣習이 변화하게 되고 不明瞭한 表現은 當事者間의 紛爭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은 데다가 두엇보다 Container 혁명으로 陸海空을 一貫하는 複合運送方式(Intermodal Through Transportation)의 확대로 改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종래의 FOB, FAS, C&F, 및 CIF等 積出地引渡條件에서 Delivered to Buyer's Premise의 輸入者指定場所地引渡條件慣行이 늘어나고 Container B/L이 一般化함에 따라 B/L上에 "Shippers' Pack, Load and Count"나 "Shippers' Measurement & Weight" 또는 "Said to Contain by Shipper" 등의 留保條項이 많아 Container 時代에 적절한 規則의 必要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ICC는 응행기술실무위원회 산하 統一規則改作業部를 중심으로 1973년 3次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同年 11月 마침 ICC는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CC Publication No. 273을 制定하여 큰 進展을 보게 된데다 開發途上國과 東歐社會主義諸國의 意見을 제출하고 UN 國際貿易法委員會(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가 積極적으로 改正作業에 參여함으로써 1974년 ICC Publication No. 290으로 마무리되어 1975년 ICC Madrid 총회에서 채택되자 197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三次 改正規則은 2次改正規則中 21조(B/L上의 受益者名 표시), 38조(取消可能 L/C의 유효기간) 및 39조(船積期間 연장과 유효기간연장의 상호관계)가 삭제되고¹⁵⁾ Container B/L條文(17조)과 L/C 양도성 條文(47조) 및 買入銀行의 一致確認書提出義務削除條文(13조)이 추가되어¹⁶⁾ 全文 47個條로 구성되어 있다.

2. 統一規則 第4次改正의 背景과 經緯

統一規則 3次改正案이 1975년부터 적용되어 온 이래 각국은 이의 實行上 많은 문제점이나 의문이 발생하게 되어 ICC에서는 각국으로부터의 質疑書에 대해 事例別로 有權解釋을¹⁷⁾ 回示했으나 사회

14) 당시 E.E.C. 6個國은 모두 ICC 統一規則을 채택하고 있었음.

15) 삭제된 條文의 번호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52, Revision에 따른.

16) 추가된 條文의 번호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74, Revision에 따른.

17) 1975~1979간의 質疑와 1980~1981간의 質疑에 대해 ICC는 각각 Decisions(1975~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ICC Publication No. 371)과 Opinions(1980~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ICC Publication No. 399)을 발간함.

의 变更내용이 多樣하고 变化속도가 급격하여大幅的인 改正·補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改正을 촉하는 要因을 살펴보면 첫째, 運送技術과 運送書類의 활목한 發展으로 複合運送證券이 보편화됨에 따른 規則上의 뒷받침의 必要性이다. 3次改正案의 제23조(Combined Transport Documents)와 제19조의 Through Bill of Lading은 解釋上 문제가 많고 “Bill of Lading for Combined Transport or Port to Port Shipment”와 같은 二重目的用 운송서류의受理를 둘러싼 혼란等이 빈번해왔다. 둘째로 國際交易이 70년대에 들어 단순한 商品의 去來를 초월하여 보다 복잡하고 多樣한 國際經營活動으로 發展한 점이다. 中長期償還을 要하고 大規模投資를 誘發하는 Plant 및 船舶輸出과 建設輸出이 활발해짐에 따라 對外支給保證, 延支給, 入札 및 履行保證等이 重要한 對外支拂手段의 역할을 하게 되어 物品交易을 위주로 하던 信用狀機能이 國際企業經營活動에 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通信革命과 複寫技術의 발달이다. 自動化된 Electronic Data Processing은 去來契約의 履行을 위한 情報나 자료의 電送으로 인쇄서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고 精密高性能의 複寫機器는 寫本의 真實性을 正本과 同一한 水準으로 보장함으로써 時間과 經費의 막대한 節減을 現實化하게 되었다. 넷째로 銀行業務나 貿易慣習의 변화로 이미 그 내용이 不適合하거나 不明瞭한 부분이 많고 表現方法上修正이 불가피한 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信用狀去來를 基於 商去來慣行, 運送 및 保險의 國際規則이 시대의 变更에 적응하여 改正되어 왔다는 점이다. 商去來慣行上의 規則으로 1978년에는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가, 1980년에는 Incoterms(1980)가 각각 改正되었고 保險規則으로 1974년 York-Antwerp Rules for General Average가, 1982년에는 New Institute Cargo Clauses A. B. C.가 개정되었으며 運送規則으로 1978년에는 U. 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Hamburg Rules)이, 1981년에는 U. 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가 각각 改正을 보게 되어 이들 規定과의 균형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섯째로는 지금까지 통일규칙을 채택치 않아 統一規則上의 經驗이 비교적 적은 後進國들의 增大된 관심과 이들의 國際貿易에 있어서의 影響力 등을 4次改正의 要因으로 들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一聯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는 1979년 11월 銀行技術實務委員會(Banking Committee)에서 統一規則 改正勸告案作成을 위한 信用狀改正勸告案作成作業班(Working Party)을 設置키로 합의하면서 改正作業이 始作된 이래 1983년 6월 Paris의 ICC 144次 理事會에서 最終確定案인 ICC Publication No. 400(ICC Document No. 470/408)이 통과되기에 이르기 까지의 主要日誌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 ① 1979. 11.: Banking Committee에서 Working Party 設置合意.
- ② 1980. 6.: 1차회의 개최.
- ③ 1980. 8.: 統一規則改正必要性에 대한 意見集約을 위해 各國의 有關機關에 質疑書(ICC Doc. No. 470/367)送付.
- ④ 1980. 12.: 同質疑書에 대한 回信을 Banking Committee에 報告하고 그 内容을 Summary Record(ICC Doc. No. 470/373)로 各 國內委員會에 통보.

18) 資料로 1979~1983中 國際商業會議所와 ICC 韓國國內委員會間에 있었던 各種 公文과 通知 및 交信記錄을 참조하여 作成함.

- ⑤ 1981.12.: 改正試案을 ICC Doc. No. 470/391로 통보.
- ⑥ 1982.3.: 위 試案에 대한 각 意見을 Working Party가 檢討.
- ⑦ 1982.4.: 改正草案을 ICC Doc. No. 470/394로 公表.
- ⑧ 1982.5.: Banking Committee에서 위 改正草案 審議.
- ⑨ 1982.6.: 위 審議決定事項을 Summary Record(ICC Doc. No. 470/395)로 公表.
- ⑩ 1982.7.: 改正草案을 Working Party가 再修正.
- ⑪ 1982.8.: 위 修正을 Revision of Uniform Rules for Documentary Credits (ICC Doc. No. 470/396)로 公表.
- ⑫ 1982.10.: Banking Committee에서 審議하고 Summary Record(ICC Doc. No. 470/401)로 公表.
- ⑬ 1982.11.: Working Party가 Revision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Doc. No. 470/403) 公表.
- ⑭ 1983.2.: 위 改正案에 약간의 修正이 加해져 Summary Record (Doc. No. 470/404) 公表.
- ⑮ 1983.3.: 다시 修正한 改正案이 ICC Publication No. 400(ICC Doc. No. 470/405)로 公表.
- ⑯ 1983.4.: 위를 다시 修正한 ICC Doc. No. 470/406을 各 國內委員會로 送付.
- ⑰ 1983.6.: Banking Commission은 ICC Doc. No. 470/406을 補完, 제144차 ICC Publication No. 400(ICC Doc. No. 470/408) 公表.
- ⑱ 1983.6.: ICC Publication No. 400이 제144차 ICC 理事會에서 最終的으로確定通過. 1984년 10월 1일부터 實施키로 힘.

III. 統一規則 第4次 改正案의 內容分析

1. 第3次 改正案과 第4次 改正案의 對比

앞의 II 장 2절에서 言한 改正의 必要性에 따라 確定公表된 第4次 改正案과 現行의 第3次 改正規則을 條項別로 對比시켜 보면 다음의 表와 같다. 즉 3次改正案은 條番 없이 a)~f)의 6個項目으로 別途處理한 總則과 本文 5個章 47個條로 이루어진 반면 4次改正案은 總則의 各項을 條文化하여 1個章으로 開입시켜 全文 6個章 55個條로 구성된 바 以下의 比較表에서는 第4次改正案全條을 순서대로 左側에 나열하고 그 主된 內容을 中心으로 小題目을 붙였으며 改正된 內容을 項目別로 간략히 要約한 뒤 이와 直結된 第3次 改正規則을 右側에 배치함으로써 이들 두 案을相互對比可자 한다.

2. 改正內容과 主要特徵

本節에서는 改正된 條項을 中心으로 하여 統一規則 제4차 改正案 原文의 部門別 배열순서에 따라 改正內容과 그 特徵을 살피고자 하며 同一하거나 비슷한 內容을 표현 방법만 약간 달리한 경우는 언급치 않는다.

貨換信用狀統一規則 및 實行 第4次改正案과 現行內容의 比較

4 次 改 正 案 ¹⁹⁾			關聯現行規則	
條項	主 要 內 容 ²⁰⁾	改 正 內 容	條項	主 要 內 容
1조	총칙 및 定義(1조~6조)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범위 및 구속력	◦ 적용대상으로 Stand-by 신용장 삽입 ◦ 신용장 통일 규칙 文言明記 의 무화	GPD(a) ²¹⁾	신용장 통일 규칙 적용범위 (貨換信用狀만 취급)
2조	信用狀의 定義	◦ 保證信用狀과 貨換信用狀의 同一 취급	GPD(b)	信用狀의 定義(貨換信用狀만 취급)
3조	신용장의 特性	◦ 신용장의 獨立抽象性 강조	GPD(c)	신용장의 特性
4조	書類 및 關聯物品과 서비스 等	◦ Goods 외에 Service, Other Performance 개념의 추가	8조a	書類 및 關聯物品
5조	신용장 및 變更에 관한 指示의 完全明確性		GPD(d)	신용장 및 變更에 관한 指示의 完全明確性
6조	受益者와 銀行의 관계 信用狀의 形式과 通知 (7조~14조)		GPD(f)	受益者와 銀行의 관계
7조	신용장의 종류와 그 明示義務		1조	신용장의 종류와 그 明示義務
8조	通知銀行의 책임과 眞偽性 確認義務	◦ 眞偽性確認義務의 추가	3조b	通知銀行의 책임과 確約
9조	取消可能信用狀의 性格		2조	取消可能信用狀의 性格
10조	取消不能信用狀의 性格과 確認 및 이의 拒否	◦ 延支給(Deferred Payment)의 경우 추가 ◦ 통지 은행의 확인거부 조항 新設 ◦ 취소나 변경의 경우 關聯 당사자 明示	3조a	取消不能信用狀의 性格
11조	신용장의 使用可能性과 銀行의 指定	◦ 決済方式의 明示義務化 ◦ Freely Negotiable L/C가 아닌 경우 支給, 引受, 買入 銀行指定義務化		
12조	電信에 의한 發行 및 조건변경	◦ Teletransmission 개념의 導入 ◦ Amend 内容과 原 L/C와의 同一한 대우 ◦ 발행 통지와 조건변경 통지의 同一 銀行利用義務化	4조	電信(cable, telegram or telex)
13조	同一(類似 : Similar)한 信用狀의 發行 抑制.	◦ 抑制條項의 추가	5조	同一(類似 : Similar)한 信用狀의 發行
14조	不完全하거나 不明確한 指示에 대한 통지 은행의 처리		6조	不完全하거나 不明確한 指示에 대한 통지 은행의 처리
15조	責任과 義務(15조~21조) 銀行의 書類審查一貫性義務		7조	銀行의 書類審查一貫性義務
16조	發行銀行의 責任과 權利		8조	發行銀行의 責任과 權利
17조	書類等에 관한 銀行의 免責	※ 免責者約款(17조~20조)	9조	書類等에 관한 銀行의 免責
18조	送達遲延等에 관한 銀行의 免責		10조	送達遲延等에 관한 銀行의 免責

19) ICC, Publication No. 400에 의한 內容임.

20) 主要內容의 제목은 필자가 條文의 의도하는 바를 요약하여 붙였음.

21) GPD는 ICC Publication No. 290의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를 의미함.

19조	不可抗力等에 따른 銀行의 免責		11조	不可抗力等에 따른 銀行의 免責
20조	他銀行에 對한 發行의뢰인의 의무		12조	他銀行에 對한 發行의뢰인의 의무
21조	償還委任에 따른 지시와 권한의 제공	◦ 債還銀行의 免責강조	13조	決済銀行에 對한 信用狀條件一致與否確認不要
22조	書類(22조~42조) 必要書類의 具體的 指示와 寫本等의 受理	◦ 꾸해야 할 표현으로 Independent와 Official 추가 ◦ 부사 및 사본서류도原本으로 認定함.	14조	必要書類의 具體的指示
23조	其他書類의 發行人 및 資料內容指示	◦ 其他書類의 作成者 및 文言明示의 무조항 추가	33조	提出된 其他書類의 受理
24조	信用狀發行日字 이전에 發行된書類의 受理	◦ L/C發行 이전에 발급된 서류의 受理許容		
25조	은행이 受理하는 運送書類 一般	※ 運送書類(25조~34조) ◦ 船積書類(Shipping Documents)를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s)로 개칭하고 운송서류를 區分함. (25조~26조)	23조	複合運送書類等의 受理
26조	海上船荷證券 및 複合運送書類의 受理와 拒絕	◦ 受理與否區分의 細分化	19조	船荷證券의 受理與否 區分
27조	선적서류의 受理와 船積表示文言	◦ 受取船荷證券도 受理可能토록 함	20조	船荷證券의 要件
28조	甲板積載表示證券의 拒絕과 不表示證券의 受理		22조	甲板積載表示證券의 拒絕과 不表示證券의 受理
29조	換積의 定義와 換積表示書類의 受理等	◦ 換積許容與否의 明示가 없으면 許容하는 것으로 간주 ◦ Container, Feeder, LASH 船積은 換積으로 간주치 않음	21조	換積表示證券의 受理
30조	郵便發送書類의 受理	◦ 郵便受取證 및 우편확인서도 書類로 인정하고 受理함.		
31조	運送支給表示書類 等의 受理		16조	運賃支給表示와 附記表示書類의 受理
32조	貨主積載 및 計量表示運送書類의 受理		17조	貨主積載 및 計量表示船積書類의 受理
33조	第3者 送貨人表示 運送書類의 受理	◦ 運送書類上의 送貨人이 受益者가 아닌 第3者라도 受理됨		
34조	無故障運送書類의 定義等		18조	無故障船積書類의 定義
35조	保險書類의 發行人 制限	※ 保險書類(35조~40조)	26조	保險書類의 發行人 制限
36조	運送書類上의 積載日字等 이 후의 日附表示와 保險書類의 拒絕		27조	船積書類上의 積載日字等 이 후의 日附表示와 保險書類의 拒絕
37조	付保通貨와 付保金額	◦ 付保金額을 CIF 또는 CIP 價額 + 10%로 許容함으로써 Incoterms 規定과 一致시킴. ²²⁾	28조	付保通貨와 金額(CIF 價額이상)
38조	付保危險種類의 明確化等과 은행의 免責		29조	付保危險種類의 明確화와 은행의 受理
39조	全危險擔保條件의 保險書類受理		30조	全危險擔保條件의 保險書類受理

22) ICC, Incoterms 1980, VI. CIF A.5.

40조	小損害免責比率 및 控除比率條件의 保險書類受理		31조	小損害免責比率 및 控除比率條件의 보험서류受理
41조	商業送狀의 名義斗 金額 및 商品明細	※ 商業送狀(41조)	32조	商業送狀의 名義斗 金額 및 商品明細
42조	重量證明書의 受理	※ 其他書類(42조)	25조	重量證明書의 受理
43조	其他條項(43조~53조) 過不足許容時 10%, 금지 文言 不在時 5%의 過不足 許容	※ 數量 및 金額(43조) ◦ 과부족적 용한도를 ±5%로 調整함.	34조	過不足許容時 10%, 금지 文言 不在時 3% 過不足許容
44조	分割船積의 許容斗 郵便券 의 한 船積	※ 分割 어음발행 및 / 또는 船積 (44조) ◦ 分割船積許容 여부의 明示가 있으면 許容하는 것으로 간주	35조	分割船積의 許容
45조	分割船積時 船積 불이행분 및 그 이후분에 대한 信用狀 無效 化	※ 割賦方式 어음 發行 및 / 또는 船積 (45조)	36조	分割船積時 船積不이행분 및 그 이후분에 대한 信用狀 無效化
46조	有效期間終了日字 및 提示	◦ 起算基準日이 通知日 또는 確認日에서 發行日로 바뀜	(37조) (45조)	有效期間明示 및 通知日 또는 確認日로 부터의 日字起算
47조	書類提示日字와 發行日字表示 및 기한경과 선하증권(Stale Bill of Lading)	◦ 航空運送時는 Flight Date가 운송書類의 發給日字임.	(15조) (41조)	船積日字와 제시일자 表示 및 기한경과 선하증권
48조	有效期日의 延長과 同事實의 證明	◦ 延長事實證明文言附記의 義務化	39조	有效期日의 延長과 同事實의 證明
49조	銀行營業時間以外에 提示된 書類		42조	銀行營業時間以外에 提示된 書類
50조	船積 및 선적기일에 관한 用語 의 해석	◦ 꾀해야 할 선적기간표시의 例 와 그 해석	40조	船積 및 선적기일에 관한 用語 의 해석
51조	期日에 適用되는 “to” 等의 해 석	※ 日字에 관련된 用語(51, 53조) ◦ to, until, till, from 等의 表示 날짜는 포함하나 after 표 시日字는 제외함.	38조	期日에 適用되는 “to” 等의 해 석
52조	月의 前半과 後半의 해석		43조	月의 前半과 後半의 해석
53조	月의 上旬, 中旬, 下旬의 해석		44조	月의 上旬, 中旬, 下旬의 해석
54조	讓渡可能信用狀의 定義와 條件 및 양도절차	※ 讓渡(54조~55조) ◦ 양도가능신용장에서 保險金額은 原信用狀金額까지 增額이 可能함.	46조	讓渡可能信用狀의 定義와 條件 및 양도절차
55조	信用狀代金의 讓渡		47조	信用狀代金의 讓渡

1. 總則 및 定義(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제1조~제6조)

(1) 제1조. 信用狀統一規則의 適用範圍 및 拘束力.

統一規則의 適用範圍로 現行의 貨換信用狀(Documentary Credit)이나 保證信用狀(Stand-by Letter of Credit)을 추가함으로써 國際入札保證이나 契約履行保證에 信用狀을 적용케 되어 신용장의 기능이 物品의 實買는 물론 國際經營에 까지 擴大되게 되었다. 아울러 法律的 拘束力を 갖지 못한 本規則이 關係當事者間에 拘束力を 갖게 하기 위하여 모든 信用狀上에 “[This] credit is issued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400”라는 信用狀統一規則適用條項文言을 삽입토록 규정하였다.

(2) 제2조. 신용장의 定義.

保證信用狀을 포함하여 신용장을 定義함으로써 物品去來上의 貨換信用狀은 물론 資本去來나 信用擔保去來를 目的으로하는 信用狀 制度를 同一하게 취급하고 있다.

(3) 제4조. 信用狀 및 관련 물품과 서비스.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關係當事者는 物品, 서비스 그리고/또는 이의 履行事項에 관계없이 全的으로 書類에 의한 去來遂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Goods 외에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의 개념을導入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2. 信用狀의 形式과 통지(Form and Notification of Credits: 제7조~제14조).

(1) 제8조. 通知銀行의 책임과 真偽性確認義務.

信用狀의 來到를 통지할 때 通知銀行은 그 신용장의 文面上의 真偽性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注意를 기울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통지은행은 慣例의으로 행해지는 方式에 따라 注意를 기울여 檢討確認할義務와 責任을 진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제10조. 取消不能信用狀의 성격과 確認 및 確認의 拒否.

取消不能信用狀에 대한 發行銀行의 確約으로 支給(Pay), 引受(Accept), 買入(Negotiate) 이외에 어음이 없이 延支給(Deferred Payment)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제10조 a, b,). 그리고 통지은행이 發行銀行으로부터 信用狀에 통지은행의 確認을 추가하도록 授權되었거나 依賴되었을 경우 이의 未備狀態에는 發行銀行가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나 발행은행이 確認을 위한 授權과 의뢰에서 별도의 明示를 하지 않으면 통지은행은 그들의 確認을 추가함이 없이 受益者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3次改正規則에서 발행은행의 授權이나 의뢰에 따라 통지은행이 일반적으로 이를 確認하되 通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4次改正案에서는 確認을 거절할 수 있는 文言을 삽입함으로써 通知銀行은 발행은행의 確認要請을 拒絕할 수 있게 되었다(10조C). 이러한 確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發行銀行, 確認銀行(있는 경우) 및 受益者의 合意를 要하는 것으로 그 관련 당사자를 all parties 等으로 막연히 포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具體的으로 明示한 점이 특이하다(10조d).

(3) 제11조. 信用狀의 使用可能性和 銀行의 指定.

新設된 條項으로 信用狀을 一覽出給, 延支給, 引受 또는 買入中 어느 方法에 따라 支給이 可能한지를 明示할 것과(11조a), 어느 銀行이든지 買入可能한 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을 제외하고는 支給, 引受, 買入을 위해 授權된 銀行을 지정도록 규정하고 있다(11조b). 이러한 指定을 받지 않은 銀行이 支給, 引受, 買入할 경우 發行銀行은 상환의무나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11조c), 支給引受, 買入銀行은 신용장에 그들의 確認을 추가하지 않은 한 發行銀行으로부터의 委任과 指示에 의해서만 支給 等의 業務를 수행할 따름이다(11조d).

(4) 제12조. 電信에 의한 發行 및 條件變更.

電信으로 信用狀發行 또는 變更를 통지할 때의 表現으로 “cable, telegram or telex” 대신에 “tel-transmission”의 用語를導入하였고 이 경우 原信用狀이나 變更된 内容이同一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12조a, b, 22조a). 아울러 발행은행과 기타 은행이 受益者에게 信用狀通知를 위하여 利用한 은행

과 그 신용장의 條件變更通知를 위하여 利用하는 은행은 반드시 同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12조d).

(5) 제13조. 同一(類似 : Similar)한 신용장의 發行여제.

이미 發行, 確認, 通知된 신용장과 同一한 신용장을 發行하여 電信으로 통지할 경우 電信料를 절약하거나 취급절차를 간편히 하기 위해 이미 發行된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一部條件이 變更되면 혼돈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紛爭을 방지하기 위해 Similar 신용장의 발행 확인 통지를 은행이 억제토록 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3. 責任과 義務(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제15조~제21조).

(1) 제21조. 債還委任에 따른 지시와 권한의 제공.

발행은행이 債還業務를 상환은행이나 決濟銀行에 委任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指示와 授權이 이루어져야 하되 그것으로서 발행은행의 源泉의인 상환의무가 免除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適期償還示履行으로 인해 발행한 利子 等에 대해서도 支給義務를 부담한다. 이는 債還銀行이 發行銀行의 지시에 따른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의도적으로義務를懈怠하지 않는 한 상환은행은 決濟資金에 대한 債還請求의 권리갖는다.

4. 書類(Documents; 제22조~제42조).

(1) 제22조. 諸書類의 구체적 지시와 寫本 等의 受理.

신용장에 의해 提示되는 諸書類의 發行人을 說明함에 있어 피해야 할 用語로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외에 “independent”와 “official”을 추가하였다(22조b). 신용장에서 별도의 明示가 없는한 은행은 原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i) 寫眞複寫 시스템, ii) 自動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거나 그 結果로서, iii) 複寫紙에 의해 作成된 모든 書類를 受理하도록 규정하여 사본 서류도 원본서류와 同一視하고 있다.

(2) 제23조. 其他書類의 發行人 및 資料內容의 明示 指示.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s; Documents Indicating Loading on Board or Dispatch or Taking in Charge)²³⁾라는 명칭을 도입하여 3次改正規則上의 船積書類(Shipping Documen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or Dispatch or Taking in Charge)²⁴⁾를 대신하고 있다(23조~34조). 그리고 이 運送書類, 保險書類 및 商業送狀 이외의 書類(其他書類)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作成者指文言이 신용장상에 明記될 것을 규정짓고 있다.

(3) 제24조. 신용장 발행일자 以前에 發行된 서류의 受理.

別途明示가 없는 한 신용장 발행일자 以前의 發行日字를 표시하고 있는 서류를 受理可能하도록 하는 규정을 新設하여 CIF條件에서 이미 船積되어 있는 物品에 대한 船荷證券을 買入하여 提示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는 무역거래상의 관습과 신용장거래상의 관습을 一致시켰다.

(4) 제25조. 銀行이 受理하는 運送書類 一般.

運送書類의 提示를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그러한 서류를 海上船荷證券(MarineB/L)이나 遠洋船荷

23) ICC Publication No. 400, D-1.

24) ICC Publication No. 290, C-1.

證券(Ocean B/L or B/L covering carriage by sea) 또는 우편수취증(post receipt)²⁵⁾나 郵便證明書(certificate of posting)로 明示하지 않는 한 提示된 운송서류의 受理與否를 다음 3가지로 구분 지워 놓았다.

a. 受理하는(will accept) 書類 : i) 지정된 運送業者나 그 代理人이 發行한 것, ii) 商品의 發送, 受託 또는 船積을 明示하고 있는 것, iii) 發行된 原本 全通 iv) 신용장의 其他 全條件에 一致하는 것(25조a).

b. 拒絕하지 않는 (will not reject) 書類 : i) Combined transport B/L, Combined transport document, Combined transport B/L or port-to-port B/L 또는 類似한 명칭의 것, ii) 서류의 全部 또는 一部가 運送서류 (short form/blank back transport document)²⁶⁾이외의 他根據나 서류를 참조하도록 指示하고 있거나, iii) 船積港과 다른 受託地點이나 揚陸港과 다른 最終目的地를 지시하거나, iv) container 또는 pallet 貨物等과 같은 貨物에 관계되거나, v) 船舶 또는 다른 운송수단, 船積港 또는 揚陸港과 관련하여豫定된(intended) 또는 유사한 표시가 있는 것(25조b).

c. 拒絕하는(will reject) 서류 : i) 儂船이라는 表示가 있는 것(25조c). ICC가 승인한 FIATA²⁵⁾複合運送書類가 아니거나 그 代理人의 發行表示가 없는 것(25조d).

(5) 제26조. 海上船荷證券 및 複合運送書類.

傳統的인 海上船荷證券에 다 複合運送部分을 補完하여 受理可能與否를 細分化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25조와 대체로 같으나 Shipped B/L의 要件을 固守하기 위하여 Container 貨物에서 揚陸地와 最終目的地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船舶船積港 및 揚陸港²⁷⁾이 確定되어야 한다고 規定하여 “intended(豫定된)”라는 用語가 表示된 서류는 拒絕토록 한 點(26조c)과 海上船荷證券에서는 運送人 또는 그 代理人이 發行할 것을 規定하여 代理權 有는 運送仲介業者를 排除한 點 및 物品의 指定船舶 積載要件에는 变함이 없다. 복합운송서류임을 표시한 서류를 受理할 수 있게 하였으며 受託地와 積載地, 揚陸地와 最終目的地가 相異한 경우에도 受理可能케 하여 複合運送과 관련하여 發行하는 운송서류를 受理할 수 있는 웅통성이 부여되었다.

(6) 제27조. 선적서류의 受理와 船積表示文言.

종래의 선적서류는 船積을 기본요건으로 하였으나 複合運送의 경우 賣買當事者の 책임한계가 內陸運送人에게 引繼引受時點이 되며 貨物²⁸⁾이 內陸貯藏所에 보관된 채 운송서류가 발행되므로 이때의 서류는 貨物受取證에 불과하다 하겠으나 4次改正案 제25조 a항²⁹⁾에서의 규정과 UN 國際複合運送條約 第10條上의 규정²⁷⁾으로 貨物受引時 발행된 복합운송서류는 船積船貨證券과 同等한 취급을 받게되어 신용장상의 他規定이나 本4次改正規則 제26조와 모순이 없는한 船積을 위한 受取船荷證券도 完全性을 갖추게 될으로써 受理可能케 되었다.

(7) 제29조. 換積의 定義와 換積表示證券의 受理.

25) FIAT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reight Forwarder

26) ...indicates dispatch or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or loading...

27) UNCTAD,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特定船舶에서 他船舶으로의 移積을 意味하던 종래의 轉積개념은 그 범위가 복합운송상 一般的的 類型으로 나타나는 受託地에서 積載他 또는 相異한 운송방식의 移積에 까지 확대되어 Feeder船, LASH barge 및 Seabees船에 적재하는 것은 本船積載의 前段階로 보아 換積의 개념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또 信用狀條件에서 換積이 금지된 경우에도 Container Freight Station, Container Yard로 표기된 서류는 受理하도록 규정하였다(29조c-iv).

(8) 제30조. 郵便發送書類의 受理.

新設된 規程으로 신용장조건에 따라 郵送할 때 우체국의 物品引受 및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발송하겠다는 確約書인 郵便受取證(post receipt)이나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도 約定된 地點 우체국의 날인, 認證 및 日附가 있으면 이를 受理하도록 하였다.

(9) 제33조. 第3者 送貨人 表示運送書類의 受理.

신용장에 別途의 明示가 없는 한 銀行은 그 신용장의 受益者 이외의 당사자를 送貨人으로 表示한 운송서류를 受理해야 한다. 운송서류상의 送貨人은 物品의 生產者, 運送周旋業者(Forwarding Agent), 신용장 受益者, 輸入商의 代理人 또는 그 이외의 第3者도 될 수 있다. 이는 이미 船積되어 운송중에 있는 貨物에 대한 운송서류를 신용장 受益者가 購買하여 提示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 있는 CIF條件을 第4次 改正에서 반영한 것으로 신용장 발행의뢰인은 필요한 경우 신용장 수익자의 身元을 隱蔽시킬 수 있는 制度의 장치가 새로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10) 제37조.. 付保通貨와 付保金額.

保險書類가 신용장에 表示된 通貨와 同一해야 함은 변동이 없으나 付保金額의 限度가 변경되었다. 즉 3次改正規則에서는 付保金額을 CIF價格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4次改正規則에서는 保險書類에서 明示되어야 할 最低付保金額을 상황에 따라 CIF²⁸⁾ 또는 CIP²⁹⁾ 價格에 10%를 加算한 金額으로 규정함으로써 Incoterms의 해당 규정³⁰⁾과 一致시켰다.

5. 其他條項(Miscellaneous Provisions; 제43조~제53조).

(1) 제43조. 過不足 許容限度의 區分.

신용장의 金額, 數量, 單價에 관하여 about, circa 또는 이와 類似한 表現이 言及된 경우 10%의 過不足을 許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과, 신용장이 포장단위 또는 個個品目의 갯수로 明示한 경우는 過不足이 전혀 許容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物品數量의 過不足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明示하고 있지 않는 한 分割船積이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어음 發行金額이 信用狀金額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5%의 過不足이 허용된다(43조b)고 규정함으로써 3차 개정 규칙의 과부족허용한도 ±3%를 4次 改正에서 ±5%로 引上한 것이 특이하다. 通常의 去來에서 ±5%의 過不足許容限度가 一般化된 慣行과 통일규칙을 一致시켰다고 하겠다.

(2) 제46조. 有效期間 終了日字 및 提示.

발행은행이 신용장에 for one month, for six months 또는 이와 유사한 表現의 기간동안 有效한

28)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29) CIP: freight/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oint of destination.”

30) ICC Incoterms 1980, VII. CIF A. 5.

것으로 記載하고, 그 起算日을 明示하고 있지 않을 때는 信用狀의 發行日字가 起算日의 初日이 되는 것으로 看做된다(46조c). 이는 3次改正規則 제45조에서 確認銀行의 신용장 확인일 또는 통지은행의 통지일을 起算日의 初日로 간주한다는 조항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3) 제47조. 書類提示日字와 발행일자 표시.

추가된 사항으로 航空運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경우에는 그 운송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實際運航日字(actual flight date)가 발행일자로 간주된다(47조b-ii).

(4) 제50조. 船積 및 선적기일에 관한 用語解釋.

선적기일을 표시하면서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類似한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用語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信用狀의 發行日字로부터 起算하여 30日이내에 선적할 것을 約定하는 것으로 해석한다(50조c). 이는 3次改正規則 제40조 b항에서 발행은행 또는 通知銀行이 수의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船積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이 4次改正案에서 변경된 것이다.

(5) 제51조. 期日에 適用되는 to 等의 解釋.

신용장에서 日字의 條件에 “~까지” “~로 부터” (“to”, “untill”, “till”, “from”)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用語는 當該日字가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된다. “~以後”(“after”)의 用語는 當該日字가 除外되는 것으로 看做된다. 즉 日字를 계산함에 있어 “to”, “untill”, “till”, “from” 等의 用語가 있으면 그 바로 다음에 言及된 日字까지를 포함하나 “after”라는 用語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言及된 日字는 除外시키는 것으로, 이번 4次改正에서는 “from”과 “after”가 추가되었다.

(6) 제54조. 양도가능신용장의 定義와 양도조건 및 절차.

양도가능신용장의 讓渡는 原信用狀의 條件에 의해서만 가능하되 例外的으로 保險金額은 原信用狀金額 또는 本條文에 規定된 付保金額까지 增額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조건中 原信用狀適用原則에 例外事項이 추가되었다(54조e).

IV. 結語

지금까지 信用狀統一規則의 第4次 改正이 있기까지의 過程과 背景 및 改正된 主要內容을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本章에서는 第4次 改正이 內包한 몇 가지 문제점을 指摘함과 아울러 統一規則의 實效를 거두기 위한 提言을 加하고자 한다.

첫째, 保證信用狀(Stand-by Credit)이 貨換信用狀과 同一한 취급을 받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物品去來는 물론 國際金融去來上의 債務에 대한 支給保證에 까지 擴大된 것은 劃期的이라 하겠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地域에 따라 混用되고 있어 보다 明確한 條項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즉 韓國과 美國 및 日本系 銀行에서는 보증신용장을 Stand-by Credit으로 부르고 있으나 中東地域이나 유우 협주의 일부 은행에서는 Clean Letter of Credit 또는 Guarantee Letter of Credit으로 호칭하고 있어 보증신용장제도의 汎世界的 普遍化를 위해서는 定義를 분명히 규정짓고 적용범

위를 明示하는 等의 補完措處가 講究되어야 하겠다.

둘째, 제12조에서 새로 導入한 teletransmission의 개념은 날로 開發되어가는 通信革命에 適應함으로써 時間과 經費의 節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발달정도는 地域에 따라 현저한 差異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低開發狀態를 免치 못한 나라의 信用狀 當事者와 科學文明의 尖端國의 當事者間에 活用되고 있는 通信媒體는 그 종류나 내용이 크게 다르다. Teletransmission이라는 用語 自體가 아직은 世界的으로 一般化되었다고 볼 수 없고 Incoterms 等에서는 Telecommunication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어 Teletransmission이 内포하는 구체적인 通信方法이 明示되지 않으면 媒體의 範疇에 관한 見解差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제31조의 cost additional to the freight charges에 대한 範圍의 문제이다. 送貨人은 基本運賃(basic sea freight)만 지급하고 나머지 追加費用은 추후 揚陸地에서 支給하는 조건으로 運賃支給畢(prepaid)의 船貨證券을 發給받을 수 있다. 運賃의 追加費用(cost additional to the freight charges)으로서 currency adjustment factor, bunker adjustment factor, heavy lift charges 및 congestion surcharge 等은 受貨人이 부담하는 것이 債例가 되어 있으나 on carriage, local taxes, optional destination fee 等은 extra expenses로서 見解差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基本運賃(freight charges) 속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것 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追加費用의 내역을 確定지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第47條上의 소위 Stale B/L 문제로서 本條에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선적서류가 발급된 후 21일 이내에 提出된 書類는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韓國과 日本의 경우와 같이 近距離間은 船舶의 運航日數가 2~3일 미만으로 선적서류보다 貨物이 先着하는 것은 예사로서 이와유사한 경우 서류제시기간을 最大限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번 4次改正에서도 별다른 言及이 없어 이에 대한 代案의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신용장통일규칙과 現行國內法과의 乖離現象이 是正되어야 하겠다. 이를테면 4次改正 통일규칙 제10조(최소불능 신용장 및 確認)과 어음법 제9조(어음發行人의 책임)는 相馳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各 運用되고 있고 貿易關係諸法規가 取消不能用狀에 限定된듯 극히 제한적인 部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미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채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國內 諸法規도 그立法趣旨가一致하도록 調整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國內 外國換銀行이 使用하고 있는 신용장관계 書式의 統一化가 요청된다. 國內法과 商慣習이 同一할뿐 아니라 운용하고 있는 規則이 同一하다면 각 外國換銀行이 發行하는 신용장, 통지서 等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銀行利用者의 便宜를 위해서 標準化된 書式이 보급되어야 하겠다.

貿易, 特히 輸出이 資源貧國의 活路로서 한국의 國民經濟에 寄與度가 至大하다는 指標는 대단히 많다. 우선 다음의 表를 참조하여 1980년초부터 1983년 말까지 4년간의 平均 산업연관효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기여도 측면에서 輸出에 의한 經濟成長率이 2.3%, 經濟成長寄與率이 28.0%, 고용유발효과의 측면에서 總就業에 대한 寄與率이 15.0%이다. 소득유발효과 측면에서 수출에 의한 外貨稼

〈產業聯關 豈과 総合表〉

子 分	연 도	1975	1978	1980	1981	1982	1983
1. 經濟成長寄與度							
① 輸出에 의한 經濟成長率(%)	3.9 56.5	2.3 23.7	1.5 —	3.0 48.4	1.3 23.2	3.7 40.2	
② 經濟成長寄與率(%)							
2. 履備誘發效果							
① 履備誘發度(名)							
名目輸出 100萬달러當	324	159	113	101	100	93	
實質輸出 100萬달러當	192	127	113	104	100	87	
② 總就業에 대한 寄與率(%)	13.9	15.0	14.5	15.1	15.0	15.4	
3. 所得誘發效果							
① 外貨稼得率(%)	65.0	64.8	63.2	62.5	63.8	63.5	
② GDP에 대한 寄與率(%)	15.6	16.6	17.8	19.1	19.1	20.2	
4. 生產誘發效果							
① 生產誘發度(倍)	1.87	1.88	2.04	2.04	2.04	2.03	
② 總產出에 대한 寄與率(%)	21.9	23.3	23.2	24.1	24.6	25.4	
5. 輸入誘發效果							
① 輸入誘發率(%)	35.0	35.2	36.8	37.5	36.2	36.5	
② 總輸入에 대한 比重(%)	24.5	29.9	28.9	30.0	32.3	33.8	

〈資料：한국무역협회〉

得率이 63.3% 國內總生產에 대한 기여율이 19.5%이며 生産유발효과 측면에서는 總產出에 대한 기여율이 최근 4년 평균 24.3%로, 이렇듯 輸出없는 韓國經濟는 생각할 수가 없다. 輸出入 物品去來의 90%를 신용장거래방식으로 카버하고 있는데다 保證信用狀의 適用 明示로 國際金融去來上의 債務履行保證에 까지 영역이 擴大됨으로써 信用狀의 역할은 갈수록 增大되어 간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1) Edwards, George E., Foreign Commercial Credit, New York: McGraw-Hill, 1922.
- 2) Finkelstein, Herman N., Legal Aspec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30.
- 3) Harvard Law Review, Nov. 1918.
- 4) Henning, Charles N., International Finance, New York: Harper & Bros., 1958.
- 5) ICC, Decisions(1975-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cation No. 371, Paris: ICC, 1980.
- 6) ICC, Doc. No.470/367, Paris: ICC, 1980.
- 7) ICC, ICC Doc. No.470/373, Paris: ICC, 1980.
- 8) ICC, ICC Doc. No.470/391, Paris: ICC, 1981.
- 9) ICC, ICC Doc. No.470/403, Paris: ICC, 1982.
- 10) ICC, ICC Doc. No.470/404, Paris: ICC, 1983.
- 11) ICC, ICC Doc. No.470/405, Paris: ICC, 1983.
- 12) ICC, ICC Doc. No.470/408, Paris: ICC, 1983.
- 13) ICC, Incoterms--1980, Paris: ICC, 1981.
- 14) ICC, Opinions(1980-81) of the ICC Banking Commmission, Paris: ICC, 1982.
- 15)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33, ICC Brochure No.82, Paris:

- ICC, 1933.
- 16)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51 Revision), ICC Brochure No. 151, Paris: ICC, 1951.
 - 17)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62 Revision), ICC Brochure No. 222, Paris: ICC, 1962.
 - 18)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74 Revision), ICC Publication No. 290, Paris: ICC, 1974.
 - 19)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400, Paris: ICC, 1983.
 - 20) Marius, John, Advise Concerning Bills of Exchange, 4th ed., 1968.
 - 21) Rosenthal, M. S., Techniques of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McGraw-Hill, 1950.
 - 22) UNCTAD,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 23) Ward, Wilbert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4th ed, New York: Ronald Press, 1958.